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33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8. 27.

고성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8. 27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9. 10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안전관리과장 김성영)

가. 개정이유

○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O 상위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4조제1항)
 - · "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 → "수립·시행할 수 있다"
- O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"성별"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도 포함시킴 (안 제4조제2항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4조의3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3)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[복지지원과-27080호(2024. 7. 5.)] : 검토의견 반영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□ 제4조제2항제2호	□ 제4조제2항제2호에	□ 제4조제2항제2호에
	성별구분항목 신설을	성별 구분 항목 반영
	제안함	

4) 기 타

-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1136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6. 26. ~ 2024. 7. 16. 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-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- 비용추계(미첨부 사유)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4조)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,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예방대책을 <u>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</u>는 강행규정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따르면 '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

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'라고 규정되어 있고

- 특히,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기본대책에 대한 수립·시행 책무를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및 현행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한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- 5. 토 론: 없음
- 6. 심사결과: 2024. 9. 10. 수정가결
 - 붙 임 1. 「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수정안
 - 2. 「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- 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[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수정 제안서

의안번호	제2833호
	관련

제안연월일	2024. 9. 10.
발 의 자	김원순 의원

1. 수정이유

O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기본대책 수립의 중요성 등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○ 제4조제1항 중 "수립·시행할 수 있다."를 "3년마다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"로 수정함.

[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에 대한 수정안

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수립·시행할 수 있다."를 "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"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조례안	수 정 안
제4조(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)	제4조(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)
①	①
<u>수립·시행할</u>	<u>3년마다 수립</u>
<u>수 있다</u> .	<u>· 시행하여야 한다</u> .

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2833호

제출연월일: 2024. 8. 27. 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보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4조제1항)
 - · "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→"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"
-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"성별"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도 포함시킴(안 제4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4조의3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· [복지지원과-27080호(2024. 7. 5.)] : 검토의견 반영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□ 제4조제2항제2호	□ 제4조제2항제2호에	□ 제4조제2항제2호에
	성별구분항목 신설을	성별 구분 항목 반영
	제안함	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1136호
 - 가) 예고기간: 2024. 6. 26. ~ 2024. 7. 16. 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(미첨부 사유)서: 붙임
- 4. 본문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"(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)"을 "(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를 "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지역·업종별"을 "성별, 지역·업종별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4조(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)	제4조(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)	
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	①	
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		
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		
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성군		
산업재해예방대책(이하 "예방		
대책"이라 한다)을 <u>매년 수립ㆍ</u>	<u>3</u> 년마다 수립	
시행하여야 한다.	•시행하여야 한다.	
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	②	
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
2.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<u>지역</u>	2 <u>성별,</u>	
<u>· 업종별</u> 실태 자료수집 및	<u>지역·업종별</u>	
분석		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	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

작성자: 안전관리과장 김성 영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산업안전보건법

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**자체 계획의 수**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 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